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5. 11. 25.

판결 선고 2015. 12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여수시 C 전 264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키, ㄴ 1, ㄱ], ㅎ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돌담을 철거하고, 별지 감정도 표시 키, E, 표, ㅎ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되어 있던 돌담을 원상복구하며,
나. 여수시 C 전 264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키, E, 고, ㅎ, ㄱ], ㄴ', 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5㎡를 인도하고,
다. 38,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. 4. 10.부터 2015. 12. 23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40%는 원고가, 6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., 나. 항, 13,587,770원과 소장부분 송달 이후 연 15%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.

이 유

1. 사실관계

[인정근거] 갑 1, 3, 4, 6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각 측량감정축탁결과, D의 임료감정축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(1) 원고는 여주시 C 전 26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)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E 대 483㎡(이하 'E 토지')의 소유자이다.(2) 피고는 2013. 3.경부터 2013. 10.경까지 E 토지상 건물 신축을 위한 차량 통행로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는데, 원고와 사이에 위 통행을 위하여 철거한 돌담을 원상복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.(3)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넘어 별지 감정도 표시 키, ㄴ 1, ㄱ], ㅎ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돌담을 설치함으로써, 같은 감정도 표시 키, E, 프, ㅎ, 그1, ㄴ 1, 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5㎡(이하 '이 사건 계쟁토지')를 점유1)하고 있다.(4) 이 사건 토지의 2013. 3. 12.부터 2014. 3. 1.까지의 월 임료는 4,840원, 2014. 3.12.부터 2014. 12. 4.까지 월 임료는 5,280원이다.

2. 돌담 철거 및 원상복구, 토지인도, 임료 상당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

(1)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상에 설치한 돌담을 철거하고, 별지 감정도 표시 키, E, 고, ㅎ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되어 있던 돌담을 원상복구하며,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(2) 원고는 2013. 3. 12.부터 2014. 12. 4.까지의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 107,770원의지급도 구한다.2)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. 3.경부터 2013. 10.경까지 E 토지상 차량 통행로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고, 그 기간 임료가 38,720원(=4,840원 × 8개월)이며, 원고와 사이에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이상3)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8,720원과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(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

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적용함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임료 상당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(피고가 돌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음).

3.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

(1) 원고의 주장 : ① 피고는 E 토지상 건물 보수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1일만 빌려주면 돌담을 그대로 쌓아준다고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임의로 길을 넓히고, 이 사건 토지에 돌을 쌓아 놓는 등 2013. 3.경부터 2013. 10.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고, 원고가 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그물, 파이프, 철근, 화단등과 유실수를 훼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. ②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파이프, 철근, 화단, 그물 손해액 8만 원, 이 사건 토지에 결명자를 제때 심지못한 손해액 30만 원, 포도나무 2그루 7만 원, 배 1박스 3만 원, 줄과 그물값 600만 원, 멧돼지가 묘 7봉상을 파헤쳐 이를 원상복구 하는데 드는 비용 700만 원 합계 1,348만 원4)의 손해를 입었다. ③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,34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(2) 판 단 :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8, 1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는 을1, 4~15, 18~21, 23, 25~28, 3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,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,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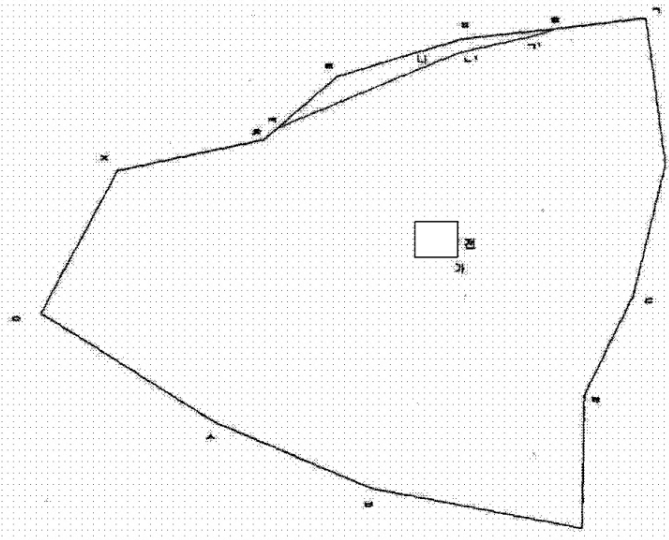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인용 한다.

판사 김원목

감 정 도

토지소재 : 전라남도 여수시

부 호 도



현 황 표 시

범 례	명 칭
———	지적선
———	감정지적선

지 번	지 목	면 적	권유자	감정부호 및 면적	사용현황
□	전	대지	□ (가)	가, 나, 다, 라, 마, 바, 사, 아, 자, 차, 카, 나, 가, 바, 가 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(가) 부분의 면적 : 259㎡	전
			□ (나)	바, 마, 프, 바, 가, 나, 바 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(나) 부분의 면적 : 5㎡	대지(담장)

감 정 인 : 지적산업기사

- 1) 원고의 2015. 1. 21.자 측량감정신청에 의하여 실시된 측량감정결과(2015. 4. 2.자 측량감정촉탁회신)이다. 2014. 8. 21.자 측량감정촉탁회신 도착 후인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침범한 부분의 돌담 철거와 원상복구 의사를 밝힌 바 있다.
- 2)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있으나, 손해배상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어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선행하여 본다.
- 3) 피고도 사용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현금을 주었으나 원고가 이를(2013. 7. 중순경 20만 원은 20일 후, 2013. 10.하순경 30만원은 3개월 후)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.
- 4) 13,587,770원(청구취지) - 107,770원(임료 청구 부분)